#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73

발의연월일: 2023. 3. 2.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이 용

김승수 • 류성걸 • 박성민

이태규 · 노용호 · 강민국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 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또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 함.

이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

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 법률 제 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① -----신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 공개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다 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 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 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삭 제>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얼굴을 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가리 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 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 <신 설> 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

	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
	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u>&lt;신 설&gt;</u>	④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